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등 고지 의무 〉  
■ 송재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058호)

2022. 9.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곽 현 준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2. 4. 1.
- (3) 회 부 일 : 2022. 4.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유튜브,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협찬 및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상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 광고를 하는 뒷광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기만과 오인 등의 피해가 발생함.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에서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사용이 급증하면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상표가 가상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형태로 노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유명인이 추천·보증하거나 가상 공간에 노출되는 상품이나 상표가 광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등을 추천·

보증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소비자 및 메타버스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의2 및 제20조).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보증을 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특정 상품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추천·보증’ 및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 및 메타버스 플랫폼 노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up>1)</sup>

#### < 신·구조문 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 5. (현행과 같음)<br>6. “추천·보증”이란 광고를 위탁한 사업자등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음성, 문자, 도형,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br>7.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이란 참여자가 현실세계와 유사 |
| <u>&lt;신설&gt;</u>                                                      |                                                                                                                                                                                              |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보증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전용기의원안(2102886), 김두관의원안(2102895), 김남국의원안(2102951), 김상희의원안(2103897)).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u></p> <p><u>제3조의2(광고 사실의 고지 의무)</u></p> <p>① <u>누구든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텔레비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u></p> <p>② <u>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상표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노출하거나 참</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0조(과태료) ①·② (생략)</p> <p>&lt;신설&gt;</p> | <p><u>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참여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1. <u>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추천·보증을 한 자</u></p> <p>2. <u>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u></p> |

| 현행                                                                               | 개정안                                                                                                                                                            |
|----------------------------------------------------------------------------------|----------------------------------------------------------------------------------------------------------------------------------------------------------------|
| <p>③·④ (생략)</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p> | <p>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거나 참여자가 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제5항까지에-----<br/>-----<br/>-----<br/>-----.</p> |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이 확산·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선택에 있어 전통적 광고 수단인 TV광고, 매장광고보다 SNS 후기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 상품구매 선택에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 >

| 구분 | 가격   | 성능   | 디자인  | 브랜드  | SNS 후기 | TV 광고문 | 매장 광고 |
|----|------|------|------|------|--------|--------|-------|
| 점수 | 4.19 | 4.17 | 3.94 | 3.74 | 3.53   | 3.25   | 3.04  |

주: 상품구매 선택에 주는 영향에 대해 1점(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영향을 준다)으로 응답  
 자료: 「인스타그램 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18.12.)」, 한국갤럽

- 그런데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후기형 기만 광고(뒷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오인 등 피해를 유발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Metaverse) 플랫폼”에 대한 사용 증가와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뒷광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공정위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

| 구분            | 네이버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합계      |
|---------------|---------|---------|-----|---------|
| 위반 게시물 수      | 7,383건  | 9,538건  | 99건 | 17,020건 |
| 자진시정 완료 게시물 수 | 15,269건 | 16,493건 | 67건 | 31,829건 |

| 위반 유형 | 미표시   | 표시위치  | 표현방식  | 표시내용  | 사용언어 | 합계     |
|-------|-------|-------|-------|-------|------|--------|
| 합계    | 7,330 | 8,056 | 3,058 | 1,704 | 640  | 20,788 |
| 비율    | 35.3% | 38.8% | 14.7% | 8.2%  | 3.1% | 100.0% |

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로, 위반 유형 구분 통계는 위반 게시물 중 2개 이상의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집계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부당광고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2.2.

- 현행 「표시광고법」 상 사업자등(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고 상품등을 추천·보증하는 행위는 제3조제1항제2호2)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서 부당한 표시·광

2)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고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 상 시정명령(제7조)<sup>3)</sup>, 과징금(제9조)<sup>4)</sup>, 징역 또는 벌금(제17조)<sup>5)</sup> 등의 제재 조치가 가능함.

###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 IV. 일반원칙

2.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V. 세부심사지침

###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때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현행 「표시광고법」 체계 상 사업자등이 아닌 개인(비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 부과 및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비사업자인 인플루언서 등에 대해서도 고지 의무 및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고지 의무의 대상이 ‘누구든지’로 포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소액의 대가나 제품 협찬을 받고 고지 없이 추천·보증하는 경우<sup>6)</sup>

6) 공정거래위원회 ‘SNS 후기 광고 게시물 작성자의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2021)결과, 전업 인플루언서의 비율은 8.3%이며, 직장인 48.8%, 주부 17.7%, 학생 7.4%, 기타 17.8%로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일반인

등에도 과태료 등 제재 부과가 가능해져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있고,<sup>7)</sup> 사업자의 경우 기존 법령 체계에서의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게 되어 중복·과잉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또한 안 제3조의2제2항의 경우,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신 유형의 플랫폼의 등장에 대응하여 가상공간에서 소비자 기만 광고로 인한 오인 가능성을 차단하고 메타버스 참여자의 피해 방지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및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 의견<sup>8)</sup> 등이 있다는 점 등을 논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표시광고법」 상 관련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으로, 온라인상 뒷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경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을 개

---

비율이 높게 나타남.

7) 참고로 김두관의원안(2102895)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플루언서(인터넷 유명인)가 일정 금액 이상(대통령령으로 규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로 고지 의무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8)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참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므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상표 등을 노출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경제적 대가 표현 방식 및 예시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추천·보증”을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음성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보증”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품등의 좋은 측면에 대한 권장 등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의를 한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현행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을 “좋은 상품으로 평가, 알리거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의 표현”으로 한정하고 있음.<sup>9)</sup>

|               |
|---------------|
| 문 의 처         |
| 02) 6788-5109 |

9)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I.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나.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